

# 장기요양시설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



관리자편

# 장기 요양시설

2023 Seoul supporting center  
for elderly careworkers



#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



관리자편

# 장기 요양시설

2023 Seoul supporting center  
for elderly careworkers

#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

서울♥마이소울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 발간사

안녕하세요.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 최경숙입니다.



산업재해라는 단어를 들으면 흔히 공사 현장이나 공장 등 중장비를 다루는 일터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의 위험은 일터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장기요양현장은 평균 60kg 무게의 사람을 맨몸으로 감당하는 일터입니다. 많은 장기요양요원들이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작업을 한 번이라도 하고 나면 온몸에 진이 다 빠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2022~2024)」의 주요 근거인 「2021년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현장의 산업재해 경험 비율은 36.2%에 달합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도 장기요양요원들은 잠시도 거리두기나 멈출 수 없는 필수노동자로서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며,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질환, 성희롱, 폭언 폭행, 사고성 재해 등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위험은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요양시설 산업재해 예방가이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좋은돌봄이 가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안전한 돌봄 환경입니다. 안전한 돌봄을 위해

장기요양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예방을 위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기요양시설 산업재해 예방가이드」는 특히 장기요양기관 중에서도 장기요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정보를 담아 장기요양요원편과 기관운영자편으로 나누어 발간되었습니다. 기관운영자편은 안전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하고자, 관리 시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와 점검표에 대한 설명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요원편은 시설종사자들이 업무과정에서 스스로 산업재해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각 직종별 위험요인과 대처방안들을 안내하는 가이드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직종 별 고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위험요인과 예방법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좋은돌봄은 안전한 돌봄 환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가이드가 장기요양요원들의 안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contents



05	01. 안전보건 관리체계
09	02. 안전보건 교육
12	03. 안전·보건조치
18	04. 위험성평가
30	05. 산업재해 관리
36	06.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
40	07. 물질안전보건자료
45	08. 근골격계질환
51	09. 건강진단
54	10. 감정노동
57	11. 직장 내 괴롭힘
60	12. 중대재해처벌
65	13. 휴게시설
68	14. 감염 관리

## 장기요양시설

### 산업재해 예방가이드를

### 펴내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매일 매일 수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때로는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각종 직업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2022년 산업재해 승인자를 기준으로 한 산업재해자는 총 130,348명이나 됩니다.  
이중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어  
장기요양시설을 포함한 영세 사업장의 산업재해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산업재해 발생은 사전에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작업 과정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원칙을 준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주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입니다.  
이 법에 명시된 사업주 의무사항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 사항입니다.

본 가이드는 장기요양시설을 기준으로 법에 규정한 방대한 사업주 의무사항 중 '300인 미만 장기요양시설'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별하여 준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점검항목과 관련된 보충자료를 제시하여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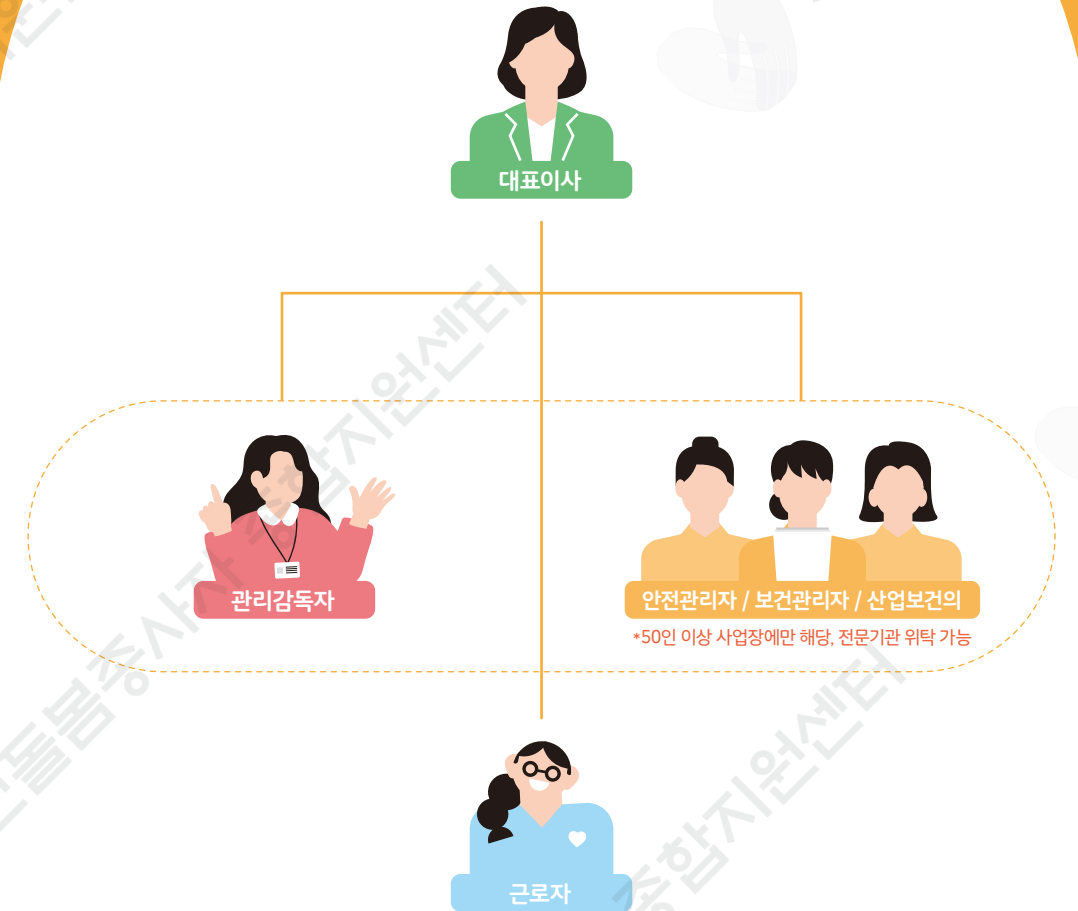
본 가이드가 장기요양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구자 이윤근, 한인임



# 01. 안전보건 관리체계

## 장기요양시설 안전보건 관리체계도





# 안전보건 관리체계

- ▶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추는 것으로 안전보건 관리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직과 인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점검표 ① 안전보건 관리체계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점검사항	비고	벌칙
1-1 <input type="checkbox"/> (관리감독자 선임) 부서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였는가?	부서장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점검사항	비고	벌칙
1-1 <input type="checkbox"/> (관리감독자 선임) 부서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였는가?	부서장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2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자 선임 혹은 위탁)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혹은 위탁)하였는가?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별도의 자격조건 있음	
1-3 <input type="checkbox"/> (보건관리자 선임 혹은 위탁)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혹은 위탁)하였는가?		
1-4 <input type="checkbox"/> (산업보건의 선임 혹은 위탁)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혹은 위탁)하였는가?		

## 보충자료 ① 안전보건 관리체계

-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장기요양시설 관련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 관리체계 요약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관리체계	주요 직무	비고
관리감독자	업무와 관련된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	부서장

####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관리체계	주요 직무	비고
관리감독자	업무와 관련된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	부서장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대부분 전문기관에 위탁
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산업보건의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	

### 5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공통 해당

#### 1-1. 관리감독자 산안법 제16조

#### 1) 선임 의무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며,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무(국)장이 됩니다.

#### 2) 관리감독자의 업무

-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작업"이라고 함)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 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해당

1) 선임 의무

-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경우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위탁 가능합니다.
- ▶ 자체 선임했을 경우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타 업무와 겸직이 가능합니다.

2) 안전관리자의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인증대상기계,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

1) 선임 의무

-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경우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 가능합니다.
- ▶ 자체 선임했을 경우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타 업무와 겸직이 가능합니다.

2) 보건관리자의 업무

-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02.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 교육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 ▶ 특히, 장기요양시설이 속해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산안법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규정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를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요양보호사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작업자만을 대상으로 개별 교육을 실시해야 하므로 다음 사항을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 점검표 ② 안전보건 교육

점검사항	핵심사항	벌칙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교육을 실시했는가?</li> </ul>	식당급식조리원, 화장실 세척작업자, 시설팀 용접 작업자	대상자 1명당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유해성 주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는가?</li> </ul>	식당 급식조리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 작업자 전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노동 예방교육) 감정노동 관리를 위한 매뉴얼 교육이 실시되었는가?</li> </ul>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 작업자 전체	-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 예방교육) 병원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자들에게 감염 예방교육을 실시했는가?</li> </ul>	전체 직원	-

## 보충자료 ② 안전보건 교육

### 2-1.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산안법 제114조

- 1) 교육 내용
- ▶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취급근로자에게 아래 정보를 포함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①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②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 ④ 적절한 보호구
    -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2) 교육시기

- ▶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 ▶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2-2.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61조

- ▶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교육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①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 ②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 ③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 ④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 ⑤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 ▶ 또한 유해요인조사 후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유해요인 조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2-3. 감정노동 예방교육 산안법 시행규칙 제41조

- ▶ 감정노동 예방 매뉴얼을 만들어 비치해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2-4. 감염병 예방교육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95조

- ▶ 사업주는 근로자가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①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 ② 전파 및 감염 경로
  - ③ 감염병의 증상과 잠복기
  - ④ 감염되기 쉬운 작업의 종류와 예방방법
  - ⑤ 노출 시 보고 등 노출과 감염 후 조치

# 03. 안전·보건조치



## Part 3

### 안전·보건조치

-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의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 특히, 이와 같은 안전보건 조치는 도급업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 급식업무 등 하도급업체의 모든 조치 사항도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 또한 이에 필요한 법령의 요지를 게시하고 필요한 정보를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점검표 ㉠ 안전·보건 조치

	점검사항	확인사항	벌칙
3-1	<input type="checkbox"/> (산안법 요지의 게시) 산안법과 산안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였는가?	포스터로 제작된 법령 요지를 관계기관에 요청	500만 원 이하 과태료
3-2	<input type="checkbox"/> (근로자대표의 안전보건사항 통지 요청) 근로자 대표가 요청한 안전보건 사항을 모두 통지하였는가?	통지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확인할 것	-
3-3	<input type="checkbox"/>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였는가?	해당되는 장소, 시설을 확인할 것	500만 원 이하 과태료
3-4	<input type="checkbox"/> (안전조치) 각종 시설, 장비, 기계 기구, 구조물 등 작업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는가?	각종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3-5	<input type="checkbox"/> (보건조치) 화학물질, 물리적 요인, 인간공학적 요인 등 각종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였는가?	작업환경 측정, 작업개선, 건강진단 등	
3-6	<input type="checkbox"/> (사업주의 작업중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가?	-	-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미보고 및 거짓 보고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7	<input type="checkbox"/> (작업자의 작업중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작업자에게 작업중지 권리와 이행조건 등을 알려줄 것	-



3-1. 산안법 요지의 게시  
산안법 제34조

보충자료 ㉔ 안전·보건 조치

- ▶ 사업주는 산안법과 산안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 포스터 형식으로 제작된 게시물은 고용노동부 및 한국안전보건공단,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게시 사례] /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2. 근로자대표의 안전보건사항 통지 요청  
산안법 제35조

- ▶ 근로자대표가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 ▶ 근로자대표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도급인(장기요양시설 등)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3-3.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산안법 제37조

- ▶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합니다.
- ▶ 설치해야 할 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안전보건 표지는 정해진 표시 방법과 규격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착사례

3-4. 안전조치  
산안법 제84조

- ▶ 사업주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차,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 ▶ 특히, 이와 같은 유해 위험요인 중 장기요양시설과 밀접한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내 각종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시설관리 등 고소 작업에서의 추락할 위험(사다리, 지붕 등)
  - 급식 및 기타 화장실 등 미끄러운 장소에서의 전도 위험
  - 침대 모서리, 배식카 등에 부딪힐 위험
  - 출입문, 배식카 등에 끼일 위험

▶ 그 외에 장기요양시설에서 이용자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는 낙상사고이며,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환자안전 관련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사항을 수시로 체크해야 합니다.

낙상 예방 체크리스트		예	아니오	의해
<b>시설환경</b>				
침대	침대의 높이는 환자가 침대에 앉았을 때,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높이이다. (환자의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고, 무릎이 90도가 되는 높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침대 바퀴가 모두 잠금상태로 고정되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침대의 난간, 바퀴, 전선, 리모컨 등이 고정 없이 정상 작동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행보조기구	보행 보조기구(휠체어, 워커 등) 고정 없이 정상 작동하고, 미끄러지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휠체어에 앉거나 일어나기 전 바퀴를 잠금상태로 고정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서랍장 바닥	서랍장은 환자의 손이 닿는 위치에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병실, 복도 등 환자가 다니는 길에 장애물이나 물기가 없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조명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간접 조명이 정상 작동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야간에 화장실을 갈 때 간접 조명등으로 시야를 확보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의류 및 소지품</b>				
의류	환자는 바짓단이 풀리지 않는 딱 맞는 환의를 착용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신발	이동 시 사이즈가 맞고 미끄러지지 않으며 끈이 없는 운동화를 착용한다. (끈이 있는 경우 이동 전에 끈이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안경	앞이 잘 보이는 깨끗한 안경을 착용하고 있고, 손이 닿는 곳에 보관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그외	자주 사용하는 소지품은 환자의 손이 닿는 곳에 보관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환자교육</b>				
호출벨	동물자가 자리를 비울 때, 환자에게 이동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호출벨을 누르도록 교육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환자에게 취침 전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교육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배뇨 및 배변	환자에게 야간에 화장실을 갈 때 반드시 동물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호출벨을 사용하여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함을 교육한다.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환자의 건강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이동식변기(물 사용) 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동물자는 낙상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되거나 혼자서 도움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함을 알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기타</b>				
도움 요청	동물자는 낙상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되거나 혼자서 도움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함을 알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환자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표 / 출처 :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3-5. 보건조치  
산안법 제84조

- ▶ 사업주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 특히, 이와 같은 유해 위험요인 중 장기요양시설과 밀접한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식실 조리과정에서의 분진·흙·미스트
  - 돌봄 과정에서의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조리과정에서의 고온·소음 등에 의한 건강장해
  - 환자이동, 목욕, 청소, 조리과정에서의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3-6. 사업주의 작업중지  
산안법 제5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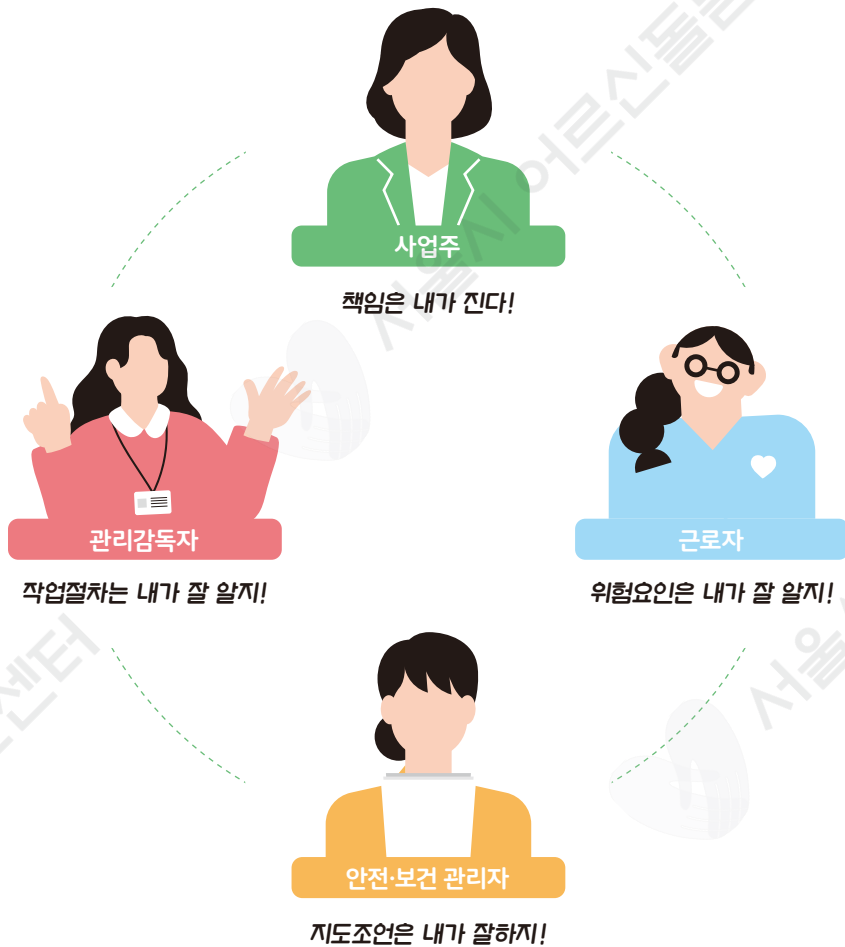
-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만약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 건설물 및 기계·기구·설비·원재료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유해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을 때는 작업중지를 직접 명할 수도 있습니다.

3-7. 작업자의 작업중지  
산안법 제52조

-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음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혹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이때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급박한 위험'은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판단에 의합니다.

# 0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주체로 실시



## Part 4

## 위험성평가

- 위험한 것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산재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이며, 그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입니다.
- 위험성평가는 그러한 유해·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이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 점검표 ④ 위험성평가

점검사항	핵심사항	벌칙
4-1 □ (위험성평가의 실시) 작업 중 상해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어 얼마나 위험한지를 평가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는가?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2 □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책임하에 관리감독자 등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실시하였는가?	사업주가 실시 주체임	-
4-3 □ (근로자 참여) 전체 평가 과정(처음부터 끝까지)에 해당 근로자가 참여하였는가?	해당 근로자 참여는 필수 조건임	-
4-4 □ (평가대상)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이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평가하였는가?	경미한 요인을 제외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해야 함	-
4-5 □ (실시주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1년)의 실시 주기는 지키고 있는가?	1년마다 평가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함	-
4-6 □ (기록 보존) 평가 결과는 3년 동안 보존하였는가?	3년 이상 보존	-



## 보충자료 ④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을 방문하면 좀 더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이에 필요한 교육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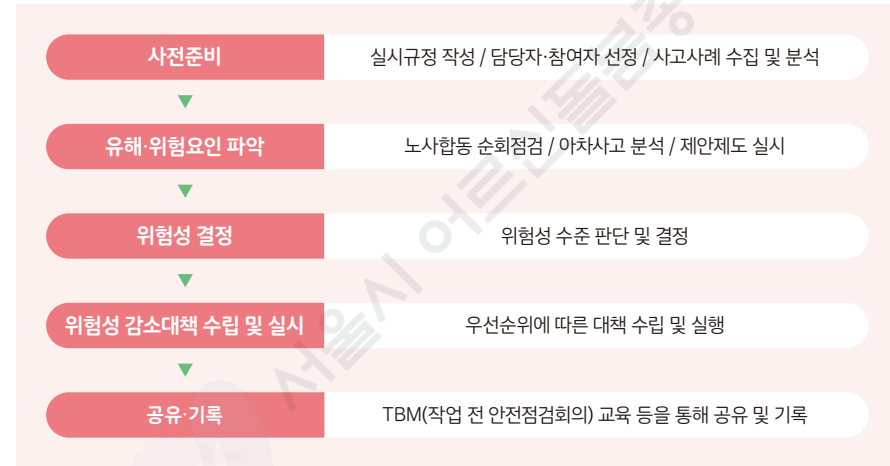
### 4-1. 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안법 제36조

#### 1) 실시 근거 및 주체

-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를 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 ▶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2) 실시 절차

- ▶ 위험성평가의 절차와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사전준비

-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 ▶ 수집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환경 측정 결과
  - 건강진단 결과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산업재해 발생 현황자료
  - 아차사고 사례
  - 병가 신청자료
  - 과거 위험성평가 자료

#### 나) 유해·위험요인 파악

- ▶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인 제안 제도, 평상 시 아차사고 발굴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 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 ▶ 장기요양시설의 주된 유해 위험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시설의 주된 유해·위험요소

구분	위험요소	작업장소
넘어짐 위험	바닥에 물, 기름 등으로 인해 미끄러질 위험 여부	급식실
	통로 확보 및 통행로에 물품 적재·방치 여부	계단 및 급식실
	장애물(문턱·배관·패인곳 등)로 인해 넘어질 위험 여부	출입문 등
	조리장·계단·통로에 적절한 조명 설치 등	급식실, 계단
	계단에 난간 설치, 계단 끝에 미끄럼 방지 조치 여부	계단
	미끄럼방지용 안전장화·작업화 등 착용 여부	급식실
감각·끼임 위험	재료 운반 대차, 배식카, 휠체어에 끼임 위험 여부	배식작업, 휠체어 이동작업
	양념재료(마늘·파·양파 등) 분쇄기·절단기에 말려들 위험 여부	급식실
	기계의 회전체(벨트·체인·날개 등)에 방호덮개 설치 여부	
	리프트, 덤웨이터의 안전한 사용 여부	환자 이동작업
절단·베임 위험	절단기·분쇄기 칼날 부위에 베임 방지용 덮개 설치 여부	급식실
	칼날 등에 베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	
감전 위험	전기 기계·기구에 감전예방용 접지 상태 여부	모든 전기시설
	누전차단기 설치 및 월1회 이상 동작점검 여부	
	전선의 노후화 또는 피복손상, 심하게 구부러짐 여부	
기타 위험	급식실 후드청소 등의 작업 시 추락할 위험 여부	급식실
	고온 스팀 사용 장소에 '고온경고' 또는 '화상주의'표지 게시 여부 등	급식실, 소독실
건강장해 위험요소	중량물, 반복 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소	환자 케어, 급식실 청소작업 등
	고온다습 환경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요소	급식실 작업
	조리흙 등에 의한 호흡기질환 위험요소	
	소음에 의한 청력장애 위험요소	
	세척제 등의 사용에 의한 피부질환 위험요소	

#### 다) 위험성 결정

- ▶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위험성의 판단 수준과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 등을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추정·판단하고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 ▶ 위험성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①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 ② 체크리스트(Checklist)법
  - ③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 ④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 ⑤ 그 외 산안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 ▶ 이 중 중소기업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에 대한 평가 방법을 요약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여기에 소개되는 평가 방법은 장기요양시설에서 가장 위험의 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위험성 평가 방법입니다.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위험성평가 방법

#### ○ 작업의 빈도(가능성) 결정

- 작업빈도는 평가 대상 작업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5단계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작업빈도 평가 기준 예시

구분	작업빈도(가능성)	내용
최상	5	초과 근무(1일 8시간 이상)
상	4	계속(1일 4시간 이상)
중	3	자주(1일 4시간 미만)
하	2	가끔(하루 또는 주 2~3일)
최하	1	3개월 마다(년 2~3회)

#### ○ 작업부하(중대성) 평가 방법

- 작업부하(중대성)는 평가하고자 하는 작업에 대해 해당 작업자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작업부하 평가 기준 예시

구분	작업부하(중대성)	내용	분류기준	
			Borg's Scale	심박수
최대	5	매우 힘들	16 등급 이상	160 이상
대	4	힘들	14 ~ 15 등급	140 ~ 150
중	3	약간 힘들	12 ~ 13 등급	120 ~ 130
소	2	쉬움	10 ~ 11 등급	100 ~ 110
최소	1	매우 쉬움	6 ~ 9 등급	90 이하

※ Borg's Scale : 작업부하(workload)를 근로자가 지각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작업부하(또는 활동수준)에 따른 심박수 변화와의 연관성(상관계수=0.88)을 근거로 개발한 범주형 비율 척도

#### ○ 위험수준 추정

- 위험성 추정은 전 단계에서 설명한 작업빈도와 작업부하 점수를 곱해서 점수를 산정합니다.

####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위험성 추정 예시

	작업빈도(중대성)	최대	대	중	소	최소
작업빈도(가능성)	단계	5	4	3	2	1
최상	5	25	20	15	10	5
상	4	20	16	12	8	4
중	3	15	12	9	6	3
하	2	10	8	6	4	2
최하	1	5	4	3	2	1

-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수준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면,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 위험성의 크기는 작업빈도와 작업부하 점수를 곱해서 나온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관리기준을 결정합니다.

####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위험성 수준 결정 예시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방법
13~25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0~12	높음		가능한 한 빨리 개선
7~9	보통		연간계획에 따라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 ○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및 공유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과 각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 그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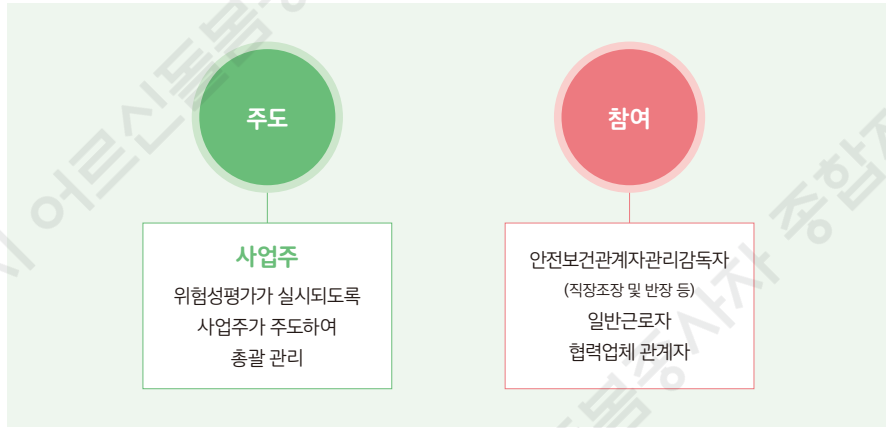
### 3) 위험성평가를 갈음하는 경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 ①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산안법 제47조)
- ② 공정한전보고서(산안법 제44조). 다만, 공정한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 ③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 ④ 그 밖에 산안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4-2. 실시 주체**

- 작업장에 존재하는 모든 유해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사업주와 근로자입니다.
-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책임 하에,
  - ① 관리감독자
  - ②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그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
  - ③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특정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외부 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중·소규모 사업장은 위험성평가의 체제 구축을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에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신청하여 전문적인 지도·조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3. 근로자 참여**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참여해야만 현장에서 실제 실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근로자 참여가 없더라도 사업주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지키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 그러나 2023년에 마련된 새로운 평가지침에는 위험성평가는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위험성평가 결과의 공유 등 전체 과정에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잘 아는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 ①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허용
  - ②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③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 ④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 ⑤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 ⑥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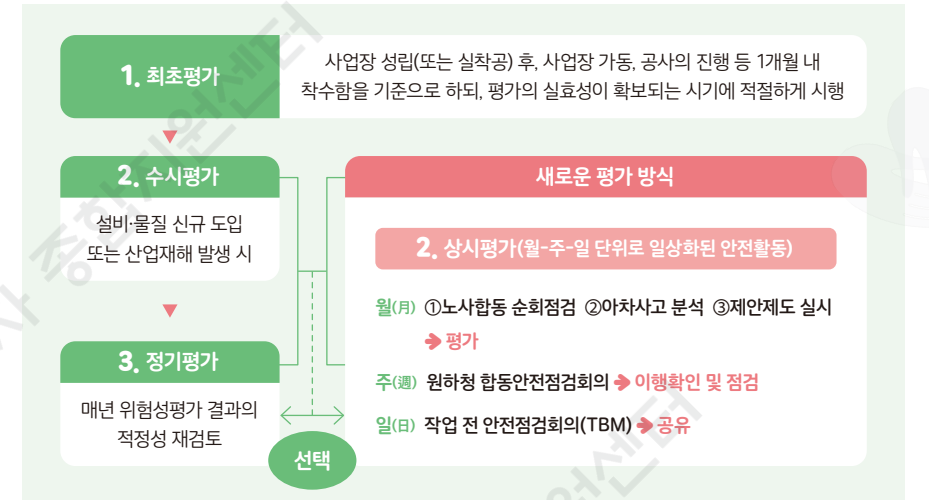
**4-4. 평가대상 산안법 제5조의2항**

-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이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합니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매우 경미한 부상과 질병이란 특별히 의사의 진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아차사고)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서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제15조제2항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밖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15조제3항의 위험성평가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내에서 아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차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시설 작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아차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아차사고 사례	
①	이용자 목욕을 시켜드리다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사고
②	이용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다가 허리가 비끗할 뻔한 사고
③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사고
④	침대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쳐 다칠 뻔한 사고
⑤	급식실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질 뻔한 사고
⑥	배식카를 밀고 가다가 앞이 잘 안 보여 부딪칠 뻔한 사고
⑦	급식실에서 무거운 식자재를 들다가 허리가 비끗할 뻔한 사고

**4-5. 실시 주기**

→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최초평가**

-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이 걸리는 작업이나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 개시 이후 지체 없이 최초평가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가급적 사업 개시 직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곧바로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최초평가를 할 때는 사업장의 전체 공정·작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수시평가

- ▶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여 사업장에 추가적인 유해 위험요인이 생기거나, 기존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수시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발생
-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장기요양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과 같은 작업은 수시평가 가능성이 높은 작업입니다.
  - 새로운 케어 장비를 신규로 도입한 경우
  -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 3) 정기평가

- ▶ 최초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면, 그동안 실시한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 ▶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 ▶ 재검토 작업은 위험성평가 결과에 빠진 유해 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때 결정된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제대로 결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4-6. 기록보존

- ▶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①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 위험요인
  - ② 위험성 결정의 내용
  - ③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④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사례 : 근골격계 부담작업

### ○ 평가 대상작업

-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중 가장 위험도가 높은 환자 이동 작업(휠체어에서 침대)에 대한 평가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평가 절차

#### 가) 작업빈도 평가

- 환자 이송 작업은 누적된 전체 작업시간은 많지 않지만, 작업빈도는 많은 편이어서 작업빈도는 '중' 정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환자 이동작업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작업빈도 평가 예시

구분	작업빈도(가능성)	내용
최상	5	초과 근무(1일 8시간 이상)
상	4	계속(1일 4시간 이상)
중	3	자주(1일 4시간 미만)
하	2	가끔(하루 또는 주 2~3일)
최하	1	3개월 마다(년 2~3회)

#### 나) 작업부하 평가

- 환자 이송작업 시 요추부하에 가해지는 작업부하는 중량물 작업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매우 힘든 작업'으로 요추부하 강도가 '매우 높은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환자 이동작업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작업부하 평가 결과 예시

구분	작업부하(중대성)	내용	분류기준	
			Borg's Scale	심박수
최대	5	매우 힘들	16 등급 이상	160 이상
대	4	힘들	14 ~ 15 등급	140 ~ 150
중	3	약간 힘들	12 ~ 13 등급	120 ~ 130
소	2	쉬움	10 ~ 11 등급	100 ~ 110
최소	1	매우 쉬움	6 ~ 9 등급	90 이하

※ Borg's Scale : 작업부하(workload)를 근로자가 지각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작업부하(또는 활동수준)에 따른 심박수 변화와의 연관성(상관계수=0.88)을 근거로 개발한 범주형 비율 척도

#### 다) 위험도 추정

- 작업빈도 점수 3점과 작업부하점수 5점을 곱하면 최종 위험점수가 15점에 해당합니다.

	작업빈도(중대성)	최대	대	중	소	최소
작업빈도(가능성)	단계	5	4	3	2	1
최상	5	25	20	15	10	5
상	4	20	16	12	8	4
중	3	15	12	9	6	3
하	2	10	8	6	4	2
최하	1	5	4	3	2	1



라) 최종 위험도 판정

- 환자 이동 작업의 위험점수는 15점으로 위험성의 크기는 '매우 높은 작업'으로 즉시 개선이 필요한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환자 이동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사례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방법
13~25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0~12	높음	허용 불가능	가능한 한 빨리 개선
7~9	보통		연간계획에 따라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장기요양시설 업무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 위험요인 체크리스트 사례

작업	유해위험요인	양호	미흡
생활실	화장실 내에 보조 손잡이/바가 설치되어 있는가?		
	침대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가?		
	침대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가?		
	운반, 이동 시 편리하도록 방해가 되는 문턱, 경사진 이동통로가 없는가?		
	슬링 리프트는 보유하고 있는가?		
	바닥에 물기 등은 바로 제거하는가?		
	올바른 이동요양(들기, 나르기, 운반)에 관한 교육은 실시하고, 근로자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신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도구는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는가? 슬라이딩보드를 비치/활용하고 있는가?		
욕실	목욕침대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가?		
	이동 가능한 목욕용 의자는 비치/활용하고 있는가?		
	바퀴가 부착된 보조도구 등을 이동 시 방해가 되는 문턱, 장애물 등이 없는가? 미끄럼방지 바닥(tile)은 설치되어 있는가?		
휴게실	요양보호사들이 쉴 수 있는 시설이 있는가?		
	휴식 제도가 있는가?		
세탁실	빨래 이동 시 이동 대차를 이용하는가?		
	세탁기의 위치, 행동반경은 적절한가?		
	미끄럼방지 바닥(tile)은 설치되어 있는가?		
	바퀴가 부착된 보조도구 등을 이동 시 방해가 되는 문턱, 장애물 등이 없는가? 세탁기의 물 호스는 세탁실 바닥으로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		
식당	안전장화를 착용하고 있는가?		
	쌀 배달 시 저장장소까지 배달해 주는가?		
	중량물 취급은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가?		
	무거운 물품들은 허리 높이 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미끄럼방지 바닥(tile)은 설치되어 있는가?		
기타 (관리적)	요양보호사 등의 직원이 물리치료실을 활용하고 있는가?		
	스트레칭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가?		
	요통예방 등 근골격계질환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보유한 경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였는가?		
	중량물 취급주의 표지판을 부착하였는가?		

# 05. 산업재해 관리



## Part 5

### 산업재해 관리

-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 ▶ 이와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사고의 발생원 등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 ▶ 만약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은폐하게 되면 매우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점검표 ⑤ 산업재해 관리

점검사항	핵심사항	벌칙
5-1 □ (산업재해 보고 의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하였는가?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사례	<b>은폐</b>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b>미보고 및 거짓 보고</b> : 1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2 □ (발생원인 기록)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에 대해 재해의 발생원인 등을 작성한 '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1개월 이내에 보고하였는가?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5-3 □ (위험성평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례에 즉각적인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는가?	위험성평가와 개선 계획 수립	
5-4 □ (중대재해 보고)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였는가?	중대재해 요건 참고	
5-5 □ (기록보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하고 있는가?	-	

5-1.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의무  
산안법 제57조

보충자료 ⑤ 산업재해 관리

1) 산업재해란?

-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 ▶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 '3일 이상의 휴업'이란 연속으로 3일 이상 휴업한 경우를 의미하며 (불연속적인 휴업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재해발생일은 3일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산업재해 은폐란?

-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숨기거나 산업재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를 말합니다.(교사·공모 등의 경우도 포함 됨)

5-2. 산업재해 발생 기록  
산안법 제57조

- ▶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산업재해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②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 ③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 ▶ '산업재해조사표'는 다음과 같은 공식적인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I.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 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⑥재해자가 파견근로 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 민간 [ ] 국가·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공사현장 명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II.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 남 [ ] 여	
	국적	[ ] 내국인 [ ] 외국인 [국적: ]	⑩체류자격: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 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 상용 [ ] 임시 [ ] 일용 [ ] 무급가족종사자 [ ] 자영업자 [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 정상 [ ] 2교대 [ ] 3교대 [ ] 4교대 [ ] 시간제 [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 (질병명)	⑯상해부위 (질병부위)	⑰휴업예상 일수	휴업	[ ] 일	
			사망 여부	[ ] 사망		
III.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⑱재해 발생 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재해 발생 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⑲재해발생원인					
IV. ⑳재발 방지 계획						
※ 위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 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기인물	□□□□□	
		작업지역·공정	□□□	작업내용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3. 위험성평가  
산안법 제36조

- ▶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향후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 ▶ 위험성평가는 '제4장 위험성평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4. 중대재해 보고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

-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 ①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 ② 조치 및 전망
  - ③ 그 밖의 중요 사항
- ▶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 ①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기준과 처벌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분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의 정의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인 경우	①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인 경우
의무 주체	자연인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개인이나 법인인 사업주(다만, 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시 행위자로서 각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사업의 대표자, 법인사업주는 양벌규정으로 처벌)
적용 범위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50인 미만은 2024.1.27.일부터 적용) 단,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해야 함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단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는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
의무 내용	경영상 결정권자로서 해야 하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②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조치	사업주가 조치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사항은 '제3장 안전보건조치' 편 참고)
처벌 수준	<b>자연인</b> : 사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가 가능하며,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b>법인</b> : 사망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	<b>자연인</b> : 사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상이나 질병의 결과와 상관없이 법령상의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b>법인</b> : 사망한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상이나 질병의 결과와 상관없이 법령상의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5-5. 산업재해 기록 보존  
산안법 제57조

-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단,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 예외)해야 합니다.
  -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②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 ③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장기요양시설의 발생빈도가 높은 주요 산업재해 사례

- ▶ 다음은 장기요양시설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사례입니다. 해당 작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위험성평가와 작업자의 면담을 통한 질병재해의 조기발견이 중요하고, 산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각적인 보고와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① 환자 돌봄 작업자의 근골격계질환 : 허리, 어깨 부위는 발생 빈도가 매우 높음
  - ② 급식 조리 업무의 근골격계질환 : 어깨, 주관절, 손목 부위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발생 빈도가 높음
  - ③ 건물 청소 업무의 근골격계질환 : 걸레작업 비중에 따라 어깨, 주관절, 손목 부위의 발생 빈도가 높음
  - ④ 식당, 계단 등에서의 미끄럼 사고
  - ⑤ 조리 업무 과정에서의 베임 사고
  - ⑥ 침대모서리 및 기타 시설과 장비에 의한 부딪힘 사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특별한 조사 없이도 산재로 인정

# 06.

##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



### Part. 6

##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

- ▶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의 원인을 찾아내어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인자(191종)에 노출되는 작업이 있을 때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6개월 주기로 측정해야 하며,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할 때는 개선계획을 고용노동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 ▶ 장기요양시설에서 측정해야 할 주요 작업은 시설유지보수 작업(용접함), 청소작업(세척제 사용), 급식실(소음, 온열) 등이 대표적입니다.

### 점검표 ㉔ 작업환경측정

점검사항	핵심사항	벌칙	
6-1	□ (작업환경측정 실시) 6개월 주기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했는가?	시설유지보수작업, 급식실, 청소작업 등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6-2	□ (근로자 대표 참여)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켰는가?	-	-
6-3	□ (근로자 설명)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줬는가?	게시판 부착, 교육 등을 통해 알려야 함	-
6-4	□ (개선계획서 제출)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측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는가?	노출기준 초과 작업	-
6-5	□ (결과 설명회)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설명회를 요청하였을 때, 측정기관으로부터 설명회가 이루어졌는가?	설명회는 측정기관에 요청하여 진행	-
6-6	□ (기록 보존) 작업환경측정 결과 서류를 5년(발암물질은 30년) 이상 보존하는가?	발암물질 측정 결과는 30년	-

**보충자료㉔ 작업환경측정**

**1) 측정대상 작업**

▶ 사업주는 아래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대하여 6개월 주기로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시설 내 작업환경측정이 필요한 작업**

구분	장기요양시설 관련 작업	비고
각종 분진류	시설 유지보수(용접흡)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 제외
각종 화학물질	급식실/화장실 등의 각종 세척제	
소음, 고열	급식실 조리작업	가장 중요한 조리흡은 법적 기준에 의한 측정대상 물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규정한 '보건조치' 대상(아래 표 참고)에 포함되므로 가능한 한 측정하는 게 직업병 예방에 도움이 됨

**※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은 장기요양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험요인으로 이에 대한 보건조치가 필요합니다.**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흡** · 미스트 · 산소결핍 ·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 · 유해광선 · **고온** · 저온 · 초음파 · 소음 · 진동 ·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 · 채광 · 조명 · 보온 · 방습 ·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 같은 시설 내에 있는 수급업체(청소, 급식 등)의 작업환경측정(비용 포함) 의무도 도급업체에 있습니다.
- ▶ 작업환경측정 시 다음과 같은 단시간 혹은 임시작업에 대해서는 측정제외 작업으로 분류합니다.

**작업환경측정 예외 작업**

구분	조건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단시간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
허용소비량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g)이 작업장 공기의 부피(m³)를 15로 나눈 양)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2) 측정 주기(산안법 제125조)**

- ▶ 처음 측정대상인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반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측정 주기를 단축 혹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주기조정 요건**

구분	내용
1	작업장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실시 +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
2	발암성 물질에 대한 측정 결과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주기를 절반으로 단축(3개월에 1회)
3	비발암성 물질에 대한 측정 결과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주기를 절반으로 단축(3개월에 1회)
4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2회 연속 85dB 미만인 경우 - 1년에 1회로 주기를 조정할 수 있음
5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 1년에 1회로 주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참여를 요구할 경우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합니다.

**6-2.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 참여**  
산안법 제125조

**6-3. 작업환경측정 결과 작업자 설명**  
산안법 제125조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에게 알려야 합니다.

▶ 만약 장기요양시설 내 청소 작업을 외부 용역기관에 도급을 주었다면 그 결과에 대해 용역업체 대표와 해당 작업자 모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관계수급인이라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함
- ①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 ②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 ③ 자체 정례 회의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 ④ 그밖에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6-4. 개선계획서 제출**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측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초과공정에 대한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6-5. 작업환경측정 결과 설명**  
산안법 제125조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설명회 등을 요청하였을 때, 이를 실시해야 합니다.

**6-6. 기록 보존**

▶ 작업환경측정 결과 서류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 ① 작업환경측정 결과 서류 - 5년
- ② 발암성 확인 물질 관련 서류 - 30년
- \* 급식실 조리 과정에서 측정된 조리흡 결과는 30년 이상 보존해야 함.

# 07.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 Part. 7

## 물질안전보건자료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란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담은 자료를 말합니다.
- ➔ 정보에는 그 물질의 이름, 성분, 유해성, 위험성, 보관방법, 다룰 때 주의할 점, 필요한 보호구, 응급조치 등 매우 유용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이러한 정보는 서류의 비치뿐만 아니라 작업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제품 용기 혹은 포장재에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 점검표 7 물질안전 보건자료

점검사항	핵심사항	벌칙
7-1 □ (비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모두 비치하고 있는가?	식당 세정제/ 시설과 용접봉/ 유류창고 등	
7-2 □ (게시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 정리한 '화학물질관리요령'을 작업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였는가?	작업장소 및 휴게실 등에 게시	1개소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7-3 □ (부착 의무)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는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한 경고표지가 부착되었는가?	-	
7-4 □ (교육 의무) 작업자들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했는가?	-	대상자 1명당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보충자료 7 물질안전보건자료

### 1) 물질안전보건자료란?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란 물질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말합니다.
- ➔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 ➔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문서 형태로 작업장 별로 비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인트라넷에 게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시설에서 작업 여부에 따라 비치해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유지보수 작업 : 용접작업 시 사용하는 용접봉과 도장 작업 시 사용하는 페인트 등
- 급식실 : 바닥 청소 및 솔 등의 세정 작업 시 사용하는 각종 세척제
- 건물 청소작업 : 화장실 및 바닥 청소 작업 시 사용하는 각종 세척제
- 각종 소독작업 : 기구 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알콜(에탄올)이나 기타 제제

###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 내용

- ➔ 물질에 관한 정보는 그 물질의 이름, 성분, 유해성, 위험성, 보관방법, 다룰 때 주의할 점, 필요한 보호구, 몸에 묻거나 먹었을 때 등의 응급조치 등 여러 가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되는 정보

구분	정보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등
유해·위험성 정보	유해·위험성 분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등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흡입했을 때 등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적절한 소화제,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등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정화 또는 제거방법 등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안전한 저장방법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노출기준, 적절한 공학적 관리, 개인보호구 등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냄새, 인화점, 인화 또는 폭발한계 상·하한, 자연발화온도 등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유해반응의 가능성, 피해할 할 조건 등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경로에 대한 정보, 단기 및 장기노출에 의한 영향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생 육생 생태독성, 잔류성과 분해성, 생물 농축성 등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방법, 폐기 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번호(UN No.), 유엔 적정 운송명, 운송 시의 위험등급 등
법적 규제 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등
기타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 최초 작성일자,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등

## 7-2 화학물질 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산안법 제114조

- ➔ 사업주는 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에 대해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작업공정별관리요령'을 다음의 세 장소 모두에 두거나 혹은 한 곳 이상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합니다.
  - ①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내
  - ② 사고 혹은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 ③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휴게실 등)
- ➔ '작업공정별관리요령'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전체 내용 중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게시해야 합니다.
  - ① 제품명
  - ②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③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④ 적절한 보호구
  -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 7-3. 경고표지 부착 산안법 제114조

### 1) 경고표지란?

- ➔ 경고표지란 대상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물질의 가장 중요한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및 환경유해성 등을 표시된 그림문자나 정보를 압축해서 제공하는 표지판을 말합니다.
- ➔ 경고표지는 대부분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제품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여 제공합니다.
- ➔ 사업장에서 별도의 용기에 덜어서 사용하거나 보관할 때는 사업주가 경고표지를 제작하여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대상화학물질을 옮겨 담기 위해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2) 경고표지 대상

- ➔ 경고표지는 다음과 같은 용기나 포장지에 부착해야 합니다.
  - ①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와 포장
  - ②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 ③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는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

### 3) 경고표시 항목

- ➔ 다음과 같이 6가지 항목이 정해진 양식과 규격에 맞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 ① 명칭 : 해당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 ② 그림문자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 ③ 신호어 :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 ④ 유해·위험 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 ⑤ 예방조치 문구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 ⑥ 공급자 정보 : 대상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1) 교육 내용

- ▶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취급근로자에게 아래 정보를 포함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①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②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 ④ 적절한 보호구
  -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2) 교육시기

- ▶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 ▶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08. 근골격계질환



# 근골격계질환

- ▶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질환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업무상 질병입니다.
- ▶ 특히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휠체어 또는 침대로 옮기기, 목욕, 체위변경 등 허리와 어깨 부위에 과중한 힘을 필요로 하는 고위험작업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3년 주기의 유해요인조사와 작업개선, 질환의심자의 의학적조치, 교육, 중량물표시 등의 사업주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점검표 ③  
근골격계  
질환

점검사항	핵심사항	벌칙
8-1	□ (유해요인조사) 매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하고 있는가?	환자이동, 목욕 등, 급식실 조리작업 등
8-2	□ (작업개선 계획 수립) 유해요인 조사 결과 위험한 작업에 대한 작업개선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보조장비 제공 등 인간공학적 개선
8-3	□ (작업자 교육) 작업자 예방 교육을 시행하였는가?	-
8-4	□ (의학적 조치) 근골격계질환 의심자에 대한 의학적 조치를 했는가?	병원진료 및 산재요양신청 등
8-5	□ (중량물 표시) 급식실 등 5kg 이상의 중량물 작업에 대한 경고 표시를 부착하였는가?	환자 이동 작업, 급식실 식자재 취급 작업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보충자료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 8-1. 유해요인조사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57조

#### 1) 유해요인조사란?

- ▶ 노동부고시로 규정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작업의 위험 정도,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증상 유무 등을 매 3년마다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2) 유해요인조사 내용

- ▶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 ①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 ②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 ③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 ▶ 3년 주기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 ①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②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③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 유해요인조사 시에는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 3) 조사 대상

- ▶ 유해요인조사는 고용노동부고시로 정한 11개 부담작업에 대해 해당 작업과 작업자를 조사해야 합니다.
- ▶ 장기요양시설을 기준으로 할 때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되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시설의 주요 근골격계 유해요인 대상 작업 현황
① 2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조리업무, 청소미화원 등)
② 4호.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기저귀 교환 등 대부분의 돌봄 자세)
③ 5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쫓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와상환자 돌봄)
④ 8호.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환자 이동, 체위변경, 목욕 등)



장기요양시설 작업의 주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항목

단위작업	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	신체부위별 유해수준
요양보호 (체위변경 이동 등)	- 요양보호대상자 등 중량물을 들거나 내리는 작업 -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 휠체어 등 기구를 활용하여 밀거나 당기는 이동 - 식사 보조 - 치매 등 증상관리	- 부자연스런 자세 - 반복성 - 과도한 힘 - 직무스트레스	- 어깨 ++ - 허리 +++ - 손, 손목 +++ - 팔꿈치 +
목욕	- 요양보호대상자를 들거나 내릴 때 - 샤워 등 목욕업무		- 어깨 ++ - 허리 +++ - 손, 손목 + - 팔꿈치 +
청소	- 물기, 오물 등 청소 - 비닐봉투(쓰레기 보관함) 들기 및 운반	- 부자연스런 자세 - 반복성 - 과도한 힘 - 미끄러짐	- 어깨 ++ - 허리 + - 손, 손목 +++ - 팔꿈치 +
세탁	- 젖은 세탁물을 꺼내거나 운반 및 보관함 이동 - 세탁물 정리 및 보관 - 세탁물을 수작업으로 건조		- 어깨 +++ - 허리 ++ - 손, 손목 ++ - 팔꿈치 ++

\* 유해성(아주강함: +++ / 강함: ++ / 있음: +)

8-2. 작업개선 계획 수립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57조

-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 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요양보호 작업의 경우 대부분 장비와 보조장치를 이용하여 환자를 옮기는 작업을 개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선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보호 작업개선 사례

<p>높이 / 각도 조절식 침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대 및 팔걸이 높이조절</li> <li>· 침대 각도조절</li> </ul> <p>높이 및 각도조절 침대 : 9개소(20.0%)</p>	<p>슬라이딩 보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은 마찰력</li> <li>· 용이한 접근</li> </ul> <p>슬라이딩 보드 보유 : 2개소(4.4%)</p>	<p>보행용 벨트(Gait bel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인 허리부위 고정</li> <li>· 간편한 탈/부착</li> <li>· 착용 시 고품, 비틀 지양</li> </ul> <p>보행용 벨트 : 4개소(8.9%)</p>
<p>높이 조절식 휠체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휠체어 높이 조절</li> <li>· 팔걸이 각도 조절</li> <li>· 용이한 접근</li> </ul> <p>높이조절식 휠체어 보유 : -(0%)</p>	<p>슬링(Sling) 리프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을 가누기 힘든 환자</li> <li>· 배터리 작동식 권장</li> </ul> <p>슬링리프트 보유 : 2개소(4.4%)</p>	<p>미끄럼 매트 / 시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은 마찰력</li> <li>· 손잡이 제공</li> </ul> <p>미끄럼 매트/시트 보유 : 4개소(13.3%)</p>
<p>목욕용 보드 / 의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퀴가 있는 경우 잠금 장치 필요</li> <li>· 팔걸이가 없는 제품</li> </ul> <p>목욕용 침상카 : 9개소(20.0%) 이동가능 목욕의자(바퀴부착) : 28개소(62.2%)</p>	<p>보조 손잡이 / 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크기 및 형태</li> <li>· 신체 지탱</li> </ul> <p>보조 손잡이/바 : 45개소(100%)</p>	<p>리프트 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편한 사용</li> <li>· 용이한 접근</li> </ul> <p>리프트 바 보유 : -(0%)</p>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요양보호직종 근골격계 예방 매뉴얼(2011)

8-3. 작업자 교육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61조

- ▶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교육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①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유해요인
  - ②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 ③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 ④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 ⑤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 ▶ 또한 유해요인조사 후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8-4. 의학적 조치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60조

- ▶ 근로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 근로자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8-5. 중량물 표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63~666조

##### 1) 중량물의 제한

-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력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합니다.
- ▶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중량물 기준은 없으나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남성은 24.5kg, 여성은 14.6kg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연령별로 세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장하는 중량물 최고기준

연령	최고무게(Kg)	
	남	여
14 - 16	14.6	9.8
16 - 18	18.5	11.7
18 - 20	22.6	13.7
20 - 35	24.5	14.6
35 - 50	20.6	12.7
50 이상	13.6	9.8

##### 2) 중량의 표시

- ▶ 사업주는 근로자가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①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 ②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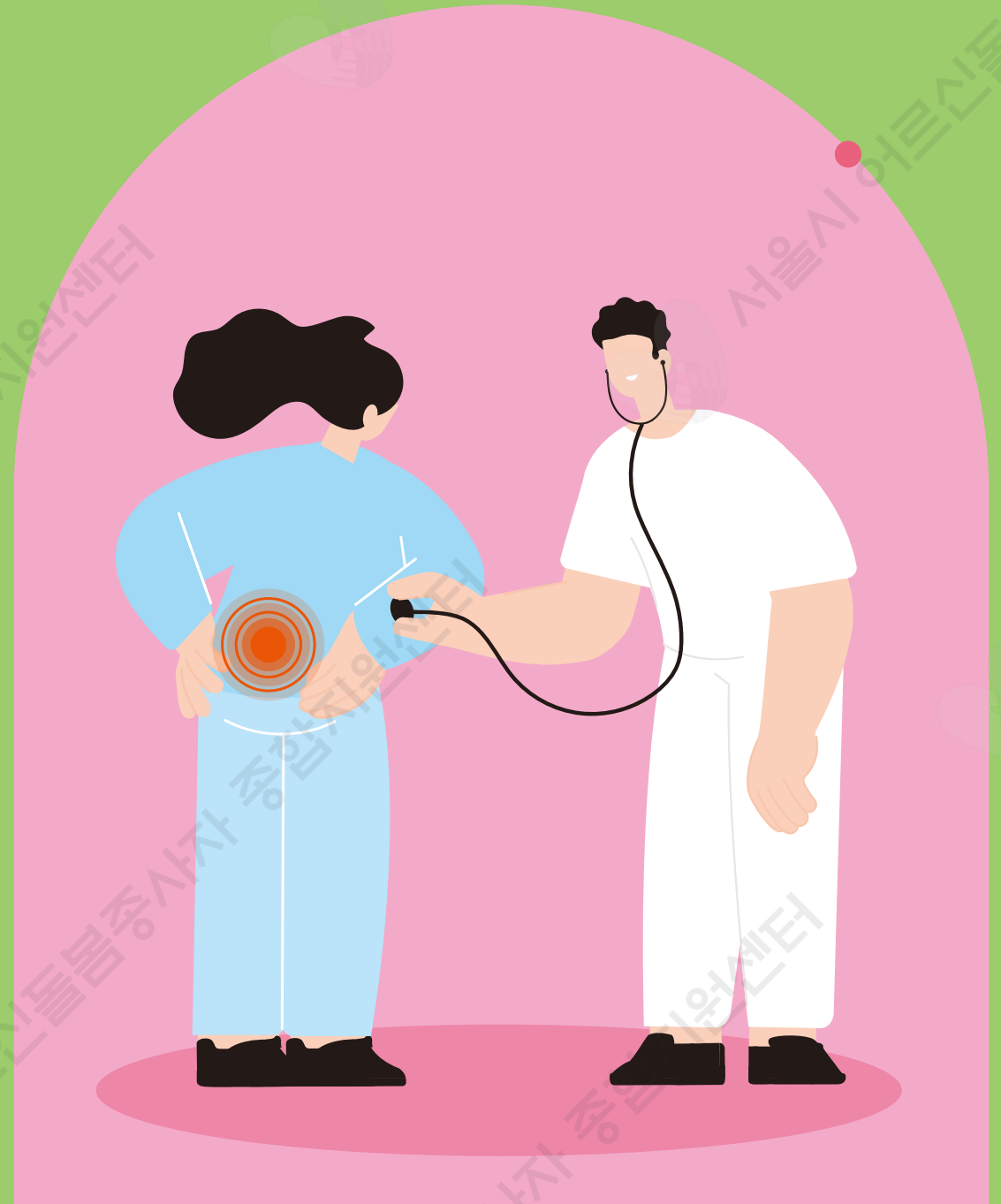


[중량물표시 사례]

- ▶ 장기요양시설에서 중량물 표시를 해야 할 주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시설에서 중량물표시가 필요한 주요 작업 현황
① 환자의 이동, 체위변경, 목욕 작업 등
② 급식실의 각종 식자재 취급작업(쌀포대취급, 세척작업 등)
③ 시설팀 내 주요 중량물 취급작업
④ 청소업무의 주요 중량물 취급작업(쓰레기 처리 작업 등)

# 09. 건강진단



# 건강진단

- ▶ 요양보호사에게 해당되는 근로자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으로 모두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점검표 9-1 건강진단

점검사항	확인사항	벌칙
9-1 □ (일반건강진단)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는가?	사무직 : 2년 주기 비사무직 : 1년 주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9-2 □ (특수건강진단) 야간교대작업자를 대상으로 1년 주기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였는가?	야간 교대작업자	
9-3 □ (배치 전 건강진단) 야간 교대작업의 경우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는가?	야간 교대작업자	

## 보충자료 9-2 건강진단

- ▶ 요양보호사들에게 해당되는 근로자 건강진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보호사 근로자건강진단 요약

부분	목적	실시대상 및 기준
일반 건강진단	고혈압, 당뇨 등 일반질환을 조기발견하고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사무직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특수 건강진단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180종의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	배치 전

### 9-1. 일반건강진단 산안법 제129조

- ▶ 일반건강진단은 다음과 같은 주기로 실시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는 연도에는 특수건강진단 시에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일반건강진단 실시 주기

사무직	비사무직	비고
2년에 1회	1년에 1회	국민건강보험법, 학교보건법 따른 건강진단으로 같을 수 있음

### 9-2. 특수건강진단 산안법 제130조

-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유해인자별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 요양보호사의 경우 해당되는 작업은 야간교대 근무자이며, 이 경우 1년 주기로 실시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대상업무	해당 작업자	실시주기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1년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9-3. 배치 전 건강진단

-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배치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 요양보호사의 경우 야간 교대작업자가 해당됩니다.

# 10.

## 감정노동



### Part. 10

## 감정노동

- ▶ 장기요양시설에서 고객(이용자, 이용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로 소통하는 직원은 감정노동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점검표 10 감정노동

점검사항		핵심사항	벌칙
10-1	□ (분리무위)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이나 보호자로부터 직원이 폭언이나 폭행에 노출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 분리조치(전화응대 종료) 하였는가?	피해노동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2	□ (휴게권)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이나 보호자로부터 직원이 폭언이나 폭행에 노출되거나 그럴 위험이 있어 피한 노동자에게 휴식(30분 이상)을 제공하였는가?		
10-3	□ (심리상담)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이나 보호자로부터 직원이 폭언이나 폭행에 노출되거나 그럴 위험이 있어 피한 노동자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였는가?		
10-4	□ (정보, 자료 지원) 피해노동자가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원할 경우, 필요한 정보 등을 지원하였는가?		
10-5	□ (불이익 금지)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이나 보호자로부터 직원이 폭언이나 폭행에 노출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 스스로 피했다고 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적이 있는가?		
10-6	□ (매뉴얼 마련)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이나 보호자로부터 직원이 폭언이나 폭행에 노출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	감정노동자	-
10-7	□ (매뉴얼 교육) 위의 매뉴얼이 직원들에게 교육되고 있는가?		
10-8	□ (예방조치)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이나 보호자로부터 직원이 폭언이나 폭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를 하고 있는가?		

## 보충자료 10 감정노동

- ▶ 현행 규제에서는 감정노동을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구체적으로 이러한 위험을 겪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부분	주요 내용
예방조치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li> <li>②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li> <li>③ 위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li> <li>④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li> </ul>
보호조치 (시행령)	<p>“사업주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li> <li>②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li> <li>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li> <li>④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li> </ul>
불이익 금지 (법률)	<p>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하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p>

# 11.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 ▶ 장기요양시설은 다양한 직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또한 조직 내 직급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 의사소통의 부족이나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 ▶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 점검표 11 직장 내 괴롭힘

점검사항	핵심사항	벌칙
11-1 □ (신고자 징계 금지) 우리 사업장은 누구라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모든 직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1-2 □ (신고 접수 시 조사) 우리 사업장은 신고 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항상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위원회 구성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1-3 □ (신고자 보호) 우리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배치전환 등을 시행한다.	보호체계 마련	
11-4 □ (가해자 징계) 우리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가해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가해자를 징계하는 구조가 있다.	인사위원회 구성	
11-5 □ (경영책임자의 가해) 우리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보충자료 11 직장 내 괴롭힘

-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부분	조치
자유로운 신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조사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	<p>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p> <p>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p>
가해자 징계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고자 불이익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들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2. 중대재해처벌



## Part. 12

### 중대재해처벌

- ➔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300평이 넘는 장기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재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 ➔ 이 법의 특징 중 하나는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잘 이행하면 사업장에서 노동자 또는 이용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면책을 한다는 것입니다.
- ➔ 또 하나의 특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일반 관리자가 아니라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 ➔ 또한 사업장 내 하도급 노동자에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사업주에게 도급사업주와 같은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점검표 12 중대재해 처벌법

점검사항	핵심사항	벌칙
12-1 □ (체계구축) 노동자·이용자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사업주 직접 관리	-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비사망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
12-2 □ (재발방지조치) 노동자·이용자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12-3 □ (명령 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12-4 □ (법령 이행) 노동자·이용자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12-5 □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 서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유지 하고 있는가?		



## 보충자료 12 중대재해처벌

### “중대산업재해”란

-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또는
-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 “중대시민재해”란

-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또는
-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또는
-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부분	주요내용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 명 미만의 경우 안전관리자 1명 선임</li> <li>-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 명 미만의 경우 보건관리자 1명 선임</li> <li>-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 명 미만의 경우 산업보건의 1명 선임 (위 3개 부문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li> <li>-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1년 2회), '위험성평가' 시 한 것으로 간주</li> <li>- 인력, 개선 등에 소요되는 예산 책정 및 집행</li> <li>-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예산을 주고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감독(1년 2회)</li> <li>-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종사자 의견을 들을 것(1년 2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시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li> <li>- 위험상황 발생 시 대응매뉴얼 제작 및 시행 점검(1년 2회)</li> <li>- 하도급이 있는 경우 위험파악 및 개선(1년 2회)</li> </ul>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1년 2회), 미 이행시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li> <li>-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실시 점검(1년 2회), 미 이행시 지체 없이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li> </ul>

### 12-1.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중재법 시행령 4조

-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해야 함. 해당 업무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담당자가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할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 5 안전·보건에 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 이행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장기요양시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해 논의하면 현장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
- 6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 조치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7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12-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재법 시행령 5조

- 1 안전·보건 관계 법령(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법령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2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수행되지 않은 경우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장기요양시설 업무에서 중대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주요 직업성 질병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 12-3. 중대재해에서 인정하는 직업성 질병 중재법 시행령 별표1

#### 12-4.

### 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재법 시행령 제10조

- ①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 ②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
  -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 ③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할 것.
- ④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연 1회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함.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봄.
- 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위 내용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⑥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⑦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 공중이용시설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조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에 관한 사항
- ⑧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공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선할 것.

#### 12-5.

### 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재법 시행령 11조

-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②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불이행시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13. 휴게시설



# 휴게시설

- ▶ 휴게시설은 2021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10인 이상 사업장이어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은 '돌봄 서비스 종사원'이 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도 설치해야 합니다.

## 점검표 13 휴게시설

점검사항	핵심사항	벌칙
13-1 □ (크기) -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인가? -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인가?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였는가?	노사협의 한 크기	-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13-2 □ (위치) - 휴게시설은 작업자 일터에서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나? - 휴게시설이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를 벗어나 있나?	안전한 장소	
13-3 □ (온도) 적절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나?	냉난방시설	
13-4 □ (습도) 적절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나?	습도유지시설	
13-5 □ (조도) 적절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나?	조명조절기능	
13-6 □ (환기) 창문을 통한 환기가 가능한가?	자연환기	
13-7 □ (비품)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나?	편리성	
13-8 □ (식수설비) 마실 수 있는 물이 제공되나?	음수	
13-9 □ (표지) 휴게시설인지 알 수 있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나?	표지부착	
13-10 □ (담당자배치) 청소·관리 담당자를 배치하고 있나?	청소담당지정	
13-11 □ (용도) 휴게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창고 등)	목적 외 사용금지	

### 13-1.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산안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 보충자료 13 휴게시설

- ▶ 크기
  -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함.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함.
  -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함.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함.
- ▶ 위치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함.
  -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함.
    - \*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 \*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 ▶ 온도
  - 적절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필요함.
- ▶ 습도
  - 적절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 필요함.
- ▶ 조명
  - 적절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 필요함.
- ▶ 창문 등을 통한 환기 필요.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필요.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 필요. 휴게시설 외부에 휴게시설 표지 부착.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함. 휴게시설 목적 이외 사용 금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90평) 미만인 경우 '크기'와 '위치' 기준 적용 안 함.

# 14. 감염관리



## Part 14

### 감염관리

- ▶ 장기요양시설과 같은 집단 시설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관련 사업주(시설 책임자)의 의무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병원체 건강장해 예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 본 점검표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에 한정해서 설명하였고, 그 외의 의학적 영역과 관련된 내용(감염병의 종류, 신고 의무, 감염관리, 격리조치 등)은 의료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표 14 감염 예방

	점검사항	핵심사항	벌칙
14-1	□ (예방관리 계획수립)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표준화된 대응매뉴얼이 있는가?	문서화된 예방매뉴얼 비치	법 제39조의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14-2	□ (예방 교육)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채용 시 교육 필수	
14-3	□ (예방조치) 공기 감염, 접촉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보호구지급, 제한조치, 환기 등)를 취했는가?	보호구 지급 등	
14-4	□ (폐기물 처리) 감염환자로부터 배출된 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하였는가?	폐기물 분리처리	
14-5	□ (접촉자 관리)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작업자를 적절하게 조치(검사, 치료, 접촉제한 등)하였는가?	접촉자 검사	
14-6	□ (입소예정자 관리) 입소예정자의 감염병에 관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입소 전 확인	



**14-1. 감염병 예방조치**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94조

- ▶ 사업주는 근로자의 혈액매개 감염병, 공기매개 감염병,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이하 "감염병"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 ② 보호구 지급,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 ③ 감염병 발생 시 원인 조사와 대책 수립
  - ④ 감염병 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 ▶ 예방조치를 위해서는 자체 내에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평소에 교육과 훈련을 시행해야 합니다.

**감염병 발생 시 대응 단계 예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감염증상 이용자 발견	간호사, 시설장 보고	보호자 연락, 병원진료 의뢰, 필요 시 공단에 연락	전파경로별 격리 주의 시행	요양실 소독, 이용자 병원 이송 등

- ▶ 1단계
  - ① 감염 증상(피부 가려움 혹은 발열, 기침 등)이 있는 이용자를 확인한다.
- ▶ 2단계
  - ① 감염증상이 있는 이용자를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 ② 간호사는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사정하고 감염성 질환 확진 전까지 표준주의로 관리한다.
- ▶ 3단계
  - ① 감염의심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② 촉탁의 병원 혹은 연계 병원으로 가서 감염성 질환여부를 확인한다.
  - ③ 감염병 진단 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한다.
- ▶ 4단계
  - ①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에게 감염성 질환에 대해 교육한다.
  - ② 전파 경로별 격리주의 지침에 따라 격리주의 시행한다.
  - ③ 접촉성 전염 질환의 경우 접촉한 종사자 및 다른 이용자의 감염여부 감별을 위해 촉탁의에게 진료 의뢰한다.
  - ④ 감염 이용자 방에서 나온 폐기물 및 린넨 등은 분리 배출한다.
- ▶ 5단계
  - ① 감염 이용자를 병원 이송 등 조치한다.
  - ② 해당 침실 및 요양원 실내 전체 소독을 시행한다.

**14-2. 교육**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95조

- ▶ 사업주는 근로자가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①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 ② 전파 및 감염 경로
  - ③ 감염병의 증상과 잠복기
  - ④ 감염되기 쉬운 작업의 종류와 예방방법
  - ⑤ 노출 시 보고 등 노출과 감염 후 조치

**14-3. 예방조치**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01조

- ▶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매개 감염병이 있는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① 근로자에게 결핵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 ② 면적이 저하되는 등 감염의 위험이 높은 근로자는 전염성이 있는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
  - ③ 가래를 배출할 수 있는 결핵환자에게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는 격리실에서 하도록 할 것
  - ④ 임신한 근로자는 풍진·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
- ▶ 사업주는 공기매개 감염병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감염병에 대한 면역상태를 파악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14-4. 폐기물 관리**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참고

- ▶ 감염성 폐기물은 별도의 지정된 폐기물박스에 버리고, 적재되어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합니다.

**14-5. 접촉자 관리**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02조

- ▶ 사업주는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① 공기매개 감염병의 증상 발생 즉시 감염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받도록 할 것
  - ② 감염이 확인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것
  - ③ 풍진, 수두 등에 감염된 근로자가 임신부인 경우에는 태아에 대하여 기형 여부를 검사받도록 할 것
  - ④ 감염된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 등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간 동안 접촉을 제한하도록 할 것

**14-6. 입소예정자 관리**

- ▶ 입소예정자의 감염병 병력 등을 포함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염병에 대한 병력이 있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 ▶ 확인해야 할 구체적인 감염병 종류와 필요한 정보는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아래 포털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http://www.kdca.go.kr/npt/>)



# 장기요양시설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

관리자편

발행인 최경숙  
발행처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발행일 2023년 9월  
연구·집필 이윤근, 한인임  
기획·편집 박미숙, 정이아  
디자인 디자인위드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장기요양현장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서울 내 4개 권역 지원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센터로서의 역할과 서북권 지원센터의 역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 광역/서북센터

- www.dolbom.org
- 02-389-7790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2층

## 동남센터

- www.dndolbom.com
- 02-401-7790
- 서울시 송파구 문정로 13 선바위빌딩 4층

## 동북센터

- www.dbdolbom.com
- 02-981-9838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남송빌딩 5층

## 서남센터

- www.sndolbom.org
- 02-830-1303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25 2층

